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 보험종목 | | |
|----------------------------------|-------|-------------------|
| 무배당 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 (보증비용부과형) | 일반심사형 | 1형 (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
| | | 2형 (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
| | 간편심사형 | 1형 (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
| | | 2형 (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

※ 다만, ‘간편심사형’의 경우 보험종목의 명칭을 “무배당 금리연동형 종신전환 특약(보증비용부과형)(간편심사형)”으로 한다.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 보험료 납입주기 |
|------|----------|------------|-----------|----------|
| | | 일반심사형 | 간편심사형 | |
| 종신 | 일시납 | 만15세 ~ 80세 | 30세 ~ 80세 | 일시납 |

- ※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전환일의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함
다만, 이 특약으로 계약을 전환할 때 피보험자를 교체하는 경우에 피보험자 가입 나이는 전환일의 전환 후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함
- ※ 이 특약으로 계약을 전환할 때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와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환 전 계약의 심사형태(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와 동일한 심사형태(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로만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전 계약의 심사형태와 다른 심사형태로 전환은 불가능함.
- ※ 이 특약으로 계약을 전환할 때 피보험자를 교체하여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와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일반심사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며, ‘간편심사형’으로 전환은 불가능함.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 (1) 이 특약의 기본보험료는 이 특약으로 계약이 전환되는 시점의 전환 전 계약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으로 한다. (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한다)
- (2) 전환일시금의 최저 한도는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다. 보험료 납입 한도

- (1)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하여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의 200%로 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연간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기본보험료 × 10%)의 한도 내에서 정한다.
- (3)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1)’ 및 ‘(2)’의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한다.
- (4) ‘(2)’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전환 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1)’ 및 ‘(2)’의 한도를 적용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따라서 특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할 수 없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전환일 이후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월 1회에 한함)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30%미만인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다.

다.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한다.

라.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 4회 까지 면제된다.

마.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begin{aligned}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 \text{국고채(5년) 수익률} \times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times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 \text{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times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 \text{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times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end{aligned}$$

(나)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 할 수 있다.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라) 국고채 가중치(B1), 회사채 가중치(B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B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egin{aligned}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frac{d}{a+b+c+d} \end{aligne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2)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begin{aligned} &\text{운용자산수익률}(\%) \\ &= \frac{2 \times I}{\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 &\text{투자지출률}(\%) \\ &= \frac{2 \times E}{\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end{aligned}$$

- I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수익

- E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비용

-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 (라)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을 헛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C}{A+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보험료 수입

-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 (마)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과 「보험료 수입」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바) 「보험료 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

라. ‘가’의 공시이율은 동종계정에 있는 동종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 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한다.

바.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12.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약관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마.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3.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가.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전환일시금을 일시납보험료로 납입합니다.

나.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수시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14.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1형

(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에 한하여 부가),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15.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총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나. 회사는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 이상의 금액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

16. 계약자적립액의 계산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7.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액}}$$

▪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액}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액}}$$

다. ‘나’의 ‘감액(또는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해당 감액(또는 인출)이 발생하기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8. 보험가입금액 감액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감액할 수 있다.

나.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감액으로 변경되는 월대체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라.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19.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기본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계약자적립액의 101%」 중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시 해약환급금이 사망보험금 이상일 경우 해약환급금 해당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다. ‘가’의 「기본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

험가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에는 추가납입 전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는 중도인출 전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 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전환 전 계약을 이 특약으로 전환 신청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으로 전환 할 수 있다. 계약 전환이 승낙된 경우 계약이 전환되는 시점은 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전환 전 계약의 월계약해당일로 한다.(이하 “전환일” 이라 한다)
- 나. 계약자는 이 특약으로의 계약 전환을 신청 할 때,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를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포함) 중 1명으로 피보험자 교체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전환 후 피보험자의 나이는 만15세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교체된 경우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
- 다. ‘나’ 에 따라 피보험자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 및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 라. ‘나’ 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일부터 이 특약의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전환 전 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는다.
- 마. 이 특약의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 바. 이 특약으로 계약을 전환한 경우, 다시 전환 전 계약으로 변경은 할 수 없다.

21. 기타

가. 전환 전 계약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환 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른다.

나.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한도 등의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